

##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에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~ 제8조).
- 라.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.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.단체의 경우에는 법인.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.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-3396-8162 FAX : 02)3396-9055
- E-mail : paperdoll@junggu.seoul.kr

##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.

1.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
2. 「지방자치법」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(이하 “상임위원회 등”이라 한다)에서 의정활동(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)을 수행하는 경우
3.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
4.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**제3조(소송비용 지원)**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.

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.

**제4조(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

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
2.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
3.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.

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(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) 2명
2.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2명
3.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
4.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,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

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·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.

**제9조(비밀유지의무)**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소송비용 환수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.

1.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
2.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(선고유예, 집행유예를 포함한다)이 확정된 경우

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.

**제11조(수당)**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(제3조제3항 관련)

### 1. 착수금

구분	지 급 기 준		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
	사건별	착수금	
민사·형사소송	가. 본안사건	(1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	○ 300만원 이내
		(2)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(소송목적의 값 기준)	가. 2000만원 미만: 2,000,000원 나.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: 3,000,000원 다.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: 4,000,000원 라.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: 6,000,000원 마.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: 8,000,000원 바. 10억원 이상: 10,000,000원
	나. 환송심	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	
기타	○ 가집행정지신청	○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	○ 신청서
	○ 헌법재판소 관할 ○ 대법원 전속관할	○ 1,000만원 이내	

[별표 2]

## **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(제3조제3항 관련)**

1.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,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. 다만,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2.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. 다만,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3.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,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,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.
  - 1)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소송비용
  - 2)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
4.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,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
[별지 서식]

소송비용 지원 신청서						
신청의원	성명			생년월일		
	주소					
	전화번호	(휴대폰) (주택)	(사무실)			
	해당 상임(특별)위원회					
소송 정보	민사소송	사건명				
		법원		사건번호		
		당사자	(원고)	(피고)		
	형사소송	사건번호				
		공소청		피고인		
		죄명				
[첨부서류] 1. 소장 부분 1부(민사소송의 경우) 또는 공소장 부분 1부(형사소송의 경우) 2.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						
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		
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일						
신청인  (인 또는 서명)						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장 귀하						